

의안번호	제512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용담댐 · 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9월 4일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512

제안연월일 : 2020. 9. 4.

제 안 자 :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주 문

- '20. 8. 8. 용담댐·대청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소중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충북 옥천·영동군 및 청주시 현도면 지역의 철저한 피해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이재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함.

제안이유

-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은 집중호우 전에 이미 제한 수위가 90% 이상 도달하였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방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하류 지역 중 충북 옥천, 영동군 및 청주시 현도면 일부지역에 주택 79동, 농경지 301헥타르가 침수되고, 14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와, 291세대 총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 댐방류 피해지역 복구 지원 근거와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리대책을 정부와 지자체는 조속히 마련하여 자연 재난과 인재 논란으로부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함.
-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댐관리 조사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댐방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도 신설, 대청댐을 중심으로 금강을 관리해야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 유역본부 이전 및 댐방류 하류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 물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여 용담댐 방류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 해 주실 것을 건의함.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 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은 제한 수위가 90% 이상 도달한 상태에서 집중호우 전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집중 호우로 방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하류 지역 중 충북 옥천, 영동군 및 청주시 현도면 일부지역에 주택 79동과 농경지 301헥타르가 침수되고, 14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와, 291세대 총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500년 빈도의 기록적인 기습폭우로 댐조절기능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는 하지만, 평상 시 댐 수위 조절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시 방류량 확대 검토가 지연되어 이러한 피해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환경부에서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댐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많은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 · 제도적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재난관련 최상위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분류하는 자연재난의 범주에도 댐 방류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비를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댐 방류 피해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이재민 구호와 복구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댐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이재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64만 도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에 대해 한 치의 의혹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과,

대청댐을 중심으로 금강을 관리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의 충청권 이전 검토 및 피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

아울러, 최근 시달된 침수피해지역 토지매수 추진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 피해보상 및 항구대책을 무엇보다 우선 추진하여 주실 것.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평상 시 철저한 댐수위 조절로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댐방류로 하류지역 피해가 없도록 충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

셋째,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으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0. 9. 16.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